議案檢討報告書

1. 發意 또는 提出者: 大田直轄市長

2. 件 名: 大田直轄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變更案

3. 案件要旨: 別添

4. 檢討意見:別添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3年 3月 日

內 務 委 員 會 專門委員 鄭 泰 大田直轄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變更案

檢 討 報 告 書

1993. 3.

内務委員專門委員

大田直轄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變更案

檢 討 報 告

本 案件은 1993. 3. 15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3.

3. 17 當委員會에 回附 되었음.

1. 提案理由

直轄市昇格時에 舊 大德郡에서 編入된 地域中 都市計劃稅 未賦課 地域에 對하여 都市計劃稅를 賦課하여 課稅衡平 維持 및 地方稅 收增大를 期하고자 함.

2. 主要骨子

- o 都市計劃稅 賦課地域 變更
 - 都市計劃 告示區域中 一部地域에 對해서만 都市計劃稅를 課稅하던 것을 都市計劃 告示區域 全地域에 對하여 賦課 地域으로 擴大 變更코자 함.

ㅇ 變更面積

(단위: km²)

總面積	都市計劃區域面積	旣賦課面積	今回追加面積
537.27	492.53	166.99	325 54

3. 檢討意見

本 案件은 大田直轄市 昇格 5年次를 맞이하여 市로 編入된 外郭 地域로의 都市計劃 擴大가 加視化 됨에 따라서, 그동안 都市

計劃稅 未賦課 地域이였던 이들 編入地域을 都市計劃稅 賦課 地域으로 追加 告示코자 하는 內容임.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現在總492.53k㎡의 都市計劃 面積中 34%인 166.99k㎡에 대해서만 都市計劃稅 賦課地域으로 하였으나, 나머지 325.54k㎡에 대하여도 都市計劃稅 賦課地域으로 擴大 告示코자 하는 것임.

따라서 大田直轄市의 都市計劃稅 賦課地域은 都市計劃 告示區域의 全面積이 되겠음.

課稅對象으로는 土地와 建物이 되겠으나, 이중 전・답・과수 원・임야등과 開發制限 區域에 대하여는 課稅對象에서 除外 되겠음.

그러나 開發制限 區域內의 골프장, 별장, 高級住宅 등과 工場, 商業用建物. 飮食店등은 課稅對象이 되겠음.

○ 現在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區域 用度別 現況을 살펴볼때 금번 追加 告示面積 325.54km²중 96%에 該當하는 312.30km²가 開發制限區域 및 綠地地域으로써 實質的인 課稅範圍는 3.7%인 12.13㎞ 만 課稅對象이 되겠으며, 이를 基礎로 稅收를 推計해

볼 때 土地·建物에서 약 15億원의 收入이 豫想된다 하겠음.

○ 그 동안 編入地域에 대한 都市計劃稅 賦課는 道路, 上下水道등 都市基盤施設의 未備를 考慮하여 留保해 왔던 것이나, 現在

直轄市 昇格 4年이 지나면서 各種 開發擴大를 통한 與件變化 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으로 租稅衡平 維持와 地方財政

의 擴充 側面에서 本 都市計劃稅의 賦課는 當然한 것이라 하겠음.

○ 그러나 本 都市計劃稅는 都市計劃事業에 再 投資되는 目的稅 로써 地域 均衡開發을 위해서는 外郭編入 地域에 優先的으로

投資하는 別途의 措置가 있어야 하며, 이들 未開發地域에 대한 多角的인 開發方案이 摸索되어야 할 것임.

또한 課稅物件이 一部에 지나지 않는 開發制限區域에 있어서 도 租稅負擔을 憂慮한 地域住民의 反撥이 豫想되는바. 開發

制限區域에 대해서는 一部만 課稅됨을 들어 理解와 說得등 積極的인 弘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